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. 4. 26 선고 2017가단95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4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1,507m²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 약 300평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 2005. 4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05. 2. 28. 전남 장흥군 C 전 1,507m²를 경락받았다.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 2동 약 300평 가량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비닐하우스 2동의 철거, 위 토지의 인도 및 2005. 4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김두희